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제출년월일 : 1993.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 적용되는 조문이 상이할 뿐만아니라 또한 동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200% 인상조정 되었고,
- 냉·난방온도제한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200% 인상조정
- 냉·난방온도제한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신설

□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 첨부

1.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84조"를 "제92조"로 하고 "제26조의 2"를 "제50조"로 하고 에너지사용자 다음에 "및 냉난방온도제한기준위반자"를 삽입한다

제2조제1호중 "제10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3조"를 "제23조"로 한다.

동조제2호중 "제22조(제30조 제2항)"을 "제35조(제46조 제2항)"로 하고 "제31조"를 "제47조"로 한다.

동조제3호중 "제36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자

제3조중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중 "6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에너지이용합리화발상 시도위임업무

(금액: 만원)

구 분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 태 료		
			1회	2회	3회
1. 에너지사용자(에너지관리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제1항	60	150	300
	나. 에너지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동법 제23조 제2항	60	150	300
2. 열사용기제조업 및 시공업	가. 제조업자 또는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의 휴지폐지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동법 제35조 및 제46조 제2항	60	150	300
	나. 형식승인된 열사용기자에 대해 자체검사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동법 제47조 제1항	150 30	240 60	300 150
3. 검사대상기기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채용,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동법제49조 제3항	60	150	300

